

# 2021년도 제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3. 17.(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선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25건(안전번호 제2021-25149호~25861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25149호~25174호(순번 1번~26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만화 불법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88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125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2021-978호~1102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 총 125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3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선임: 제1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 5쪽의 저작물명, 불법사이트명, 6쪽의 불법사이트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불법사이트명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함.

####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B, A, C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선임: 금일 심의안건은 3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92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26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를 무료 내지 40 포인트에 각각 제공한 사안임. 총 39개 게시물임.

(순번 1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권~7권을 zip 파일로 40 포인트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식 발행본이 아닌 해적판을

번역하여 판매한 것으로 추정됨.

게시물 이미지 내에는 “♡♡ ♡♡ ♡♡♡♡♡♡♡ ♡♡♡♡ ♡♡♡  
♡”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재업로드한 것으로 보여짐. 인터넷 서점 등에서 단행  
본을 약 4,500원에 판매중임.

(순번 9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2권을 zip 파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  
면서)해당 사이트를 직접 확인한 결과, 현재 해당 저작물을 50 포인  
트에 판매중에 있음. 정기결제권을 구매한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인터넷 서점 등에서 단  
행본을 약 4,950원에 판매중임.

(순번 26번 심의대상 게시물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권~11권을 zip 파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지면서)순번 9번과 동일하게, 현재 해당 저작물  
을 12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자유이용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임.

게시물 이미지 내에는 “♡♡ ♡♡ ♡♡♡♡♡♡♡ ♡♡♡♡♡♡♡  
♡”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  
로드 받아 재업로드한 것으로 보여짐. 인터넷 서점 등에서 단행본을  
약 4,050원에 구매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게시물  
수, 저작물 판매현황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  
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26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순번 1번~26번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B 위원: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6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선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27번~71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수는 886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만화,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

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첫사랑’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68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첫사랑’을 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MBC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 OST 모든 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은 OST 수록곡 중 1곡임. 가수는 ‘에피톤 프로젝트’이며, 2018. 10. 4.에 발매된 발라드 음악임. 멜론 등 음원사이트에서 유료 이용권 구매 후 구매 가능함.

(영화 ‘화이트 타이거’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27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화이트 타이거’를 무료로 전체분량을 제공한 사안임. 2021년에 공개된 인도, 미국 액션 영화로써, 넷플릭스에서 유료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방송 ‘빈센조’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98번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방송 ‘빈센조’의 다수의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다수의 방송 캡처 이미지와 1화부터 8화까지의 하이라이트, 예고편, 본편 등 총 12개의 영상물을 함께 게시함.

해당 저작물은 tvN에서 2021. 2. 20.부터 현재까지 8화 방영중이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화당 1,650원에 대여 가능함. 블로그명은 ‘♡♡♡♡♡♡♡♡♡♡♡♡ ♡♡♡♡♡ ♡♡♡’이며, 게시자명은 ‘♡♡♡♡’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27번~71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A, B 위원: 순번 27번~713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7번~71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25149호~25861호(순번 1번~71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 8쪽부터 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978호~1102호(순번 1~125번)의 구글 검색결



과 제한을 가결함”

###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3. 17.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